

제 11 장 입소 및 이용료

제133조 (시설입소의 정의와 목적)

- ① “시설입소”는 노인복지시설 중 요양시설에 입소대상자가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34조 (입소대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해당등급자)에 한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자

제1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69명이며, ‘장기요양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기관 및 지역주민, 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 ② 시설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③ 상담: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 ④ 교구 주보와 교구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36조 (입소의 제한)

원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해당 입소자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① 전염성 질환자.
- ② 기타 다른 노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입소자.

제137조 (입소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성모전문요양원의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의해 비용이 결정되며, 이용료 변경 내용을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유선이나 내방 시 직접 안내하고, ‘본인부담금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전송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38조 (입소계약)

입소자와 성모전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 시설

입소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② 계약목적: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입소자(“갑”)와 성모전문요양원(“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서비스이용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3)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5)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9)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2)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3)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의' 의 해지 : '입소자' 와 '신원인수인'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2) '서비스 제공자' 의 해지
 - ㄱ.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ㄴ.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ㄷ. 월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 ⑤ 시설과 입소자의 계약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퇴소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갑” 이 사망했을 때
2. “갑” 또는 “을” 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139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가 장기요양기관인 성모전문요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별 서비스를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관리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진료

4. 신체재활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5. 상담서비스: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

6. 급식서비스: 균형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의 유지 및 관리

- ② 비용의 부담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식재료비)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비용은 “을” 의 청구에 의해 “갑” 이 지급한다.

제14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그에 따른 비용)

- ① 입소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침실에 배치 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특별침실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감염성 질환의 의심 및 진단 대상자
2. 호스피스 대상자
3. 일시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자

- ③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침실 이용수칙을 따른다.

제141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① 입소자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물품 및 비품에 대하여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②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③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입소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2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처리절차)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협약의사, 간호사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시설은 협약의사를 두어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수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의 상태가 중한상태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 시설은 입소자(보호자)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4. 입소자의 치료를 위한 병원이용 및 기타의료시설 및 의료소모품의 비용 등의 비급여 항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상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6.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치료절차

1. 입소자의 병이나 신체적 손상이 시설 자체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시설에서 책임 하에 치료한다.
2. 입소자의 상태가 중한 상태일 경우 :
간호사가 먼저 판단하고, 협약의사와 상담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알린다.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시설의 지정병원 혹은 보호자가 원하는 기타 의료 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 때, 진료비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3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기관에 관계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4조 (손해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 ① 시설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과 천재지변, 기타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 자해, 자살, 탈주, 본인의 과실, 병사,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이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서비스실시 중에 시설(직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입소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은 이용대상 입소자에게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 처리하도록 한다.

제145조 (여가활동 및 상담)

- ① 입소자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입소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종교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6조 (급식·위생관리)

- ① 시설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 ②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그에 맞는 특별식 및 치료식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별첨 2. < 2025년 등급별 시설급여의 비용 >

종류	내용	급여수가 /일	횟수/금액			비고	
			28일	30일	31일		
1 등급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90,450	506,520	542,700	560,790	일반 (20%)	
			303,912	325,620	336,474	감경(12%)	
			202,608	217,080	224,316	감경(8%)	
			0원	0원	0원	기초수급자 (0%)	
종류	내용	급여수가 /일	횟수/금액			비고	
			28일	30일	31일		
2 등급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83,910	469,896	503,460	520,242	일반 (20%)	
			281,932	302,070	312,139	감경(12%)	
			187,936	201,360	208,072	감경(8%)	
			0원	0원	0원	기초수급자 (0%)	
종류	내용	급여수가 /일	횟수/금액			비고	
			28일	30일	31일		
3 등급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79,240	443,744	475,440	491,288	일반 (20%)	
			266,246	285,264	294,772	감경(12%)	
			177,497	190,176	196,515	감경(8%)	
			0원	0원	0원	기초수급자 (0%)	
종류	내용	급여수가 /일	횟수/금액				비고
			28일	29일	30일	31일	
4 등급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등급과 동일				일반 (20%)
							감경 (8%,12%)
							기초수급자 (0%)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종류	내용	비용	
식비 (간식비 포함)	유동식 및 간식 (오전, 오후 각 1회 지급) :1끼니 2,500원*3끼=7,500원 간식*500원=500원 총=8,000원	8,000원/일	일원
			한 달 : 240,000원
이.미용비	개별 요청에 의한 서비스	실비수납	
	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무료	
병의원진료 및 약값	개별 병명에 의한 진료 및 처방전	실비수납	
개별적 요구에 의한 물품 및 용역서비스	· 외출 서비스 · 원거리 병원 동행 서비스 · 기호식품 구입 등	개인별 실비수납	

위의 수가는 2025년 1월 기준임. 장기요양 수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함.